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8px;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제846호 2022. 2. 23.(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2-26호 도로명주소 고시 2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2-299호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

거창군 공고 제2022-305호 거창군 청소년 이용시설 임시휴관 공고 12

거창군 공고 제2022-321호 북상 산수(208호선)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13

회 램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23.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승강기단지3길 9 등 14건
- 건물번호 변경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1길 16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이동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05, 2406, 2407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승강기단지3길 9	20220223	20170719	승강기전문농공단지 특성 반영	건물번호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1151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1길 51-12	20220223	20090401	마을 뒷산에 용의 머리 같이 생긴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거거리 1105-2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고들고개길 48-92	20220223	20090401	고들고개라는 옛지명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4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961-10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은지밭길 168	20220223	20090401	은지밭이라는 옛지명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5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205-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소룡길 233	20220223	20090401	마을 뒤에 소룡산이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6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429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곡길 80-20	20220223	20090401	고려말 무과급제를 했던 유형귀 장군의 전설이 있는 대곡마을명이 반영	건물번호 부여	
7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911-1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웅양로 657-73	20220223	20091228	행정구역 웅양을 이용하여 웅양로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8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산138-2, 산138-4, 산138-6, 산139-6, 1161-104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용전3길 175	20220223	20090401	마을앞 해덕들에서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에 따라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세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9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1161-16, 산138-3, 산138-5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용전3길 177	20220223	20090401	마을앞 해덕들에서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에 따라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세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10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1508-1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가북로 1150-39	20220223	20091228	가북으로 가는길로 불려진 것에서 유래	건물번호 부여	
11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연교리 607-7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연교2길 9	20220223	20090401	연교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12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498-1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686	20220223	20091228	송계사를 지나 고제면으로 가는 길임을 반영한 도로	건물번호 부여	
13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30-3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밤티재로 1063-8	20220223	20091228	밤티재라는 지명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14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345-3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내탐길 26	20220223	20090401	내탐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15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1길 16-6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1길 16	20220223	20090401	양지바른 마을이라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건물번호 변경	

거창군 공고 제2022-299호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거창군수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세제지원을 위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안 제2조)
 - 자동차세: 2022. 6. 30. ⇒ 2024. 12. 31.
-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안 제9조의2)
 - 재산세: 2021. 12. 31. ⇒ 2022. 12. 31.
-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10조)
 -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300원
 -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600원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재무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 거창군청(재무과)
- 전화) 055-940-3231, 팩스) 055-940-3219, 이메일) smile0807@korea.kr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4. 붙임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2022년 6월 30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의2 중 “2021년”을 각각“2022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150원”을“300원”으로, 같은 항 제2호 중“300원”을 “6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한다)에 별표에 따른 경감률을 곱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경감률은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제10조(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2022년-----

-----.

제10조(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①-----

-----.

1. -----

-----300원
2. -----

-----600원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 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을·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적용 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

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의 적용 대상자로서 법 제2장 감면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감면 세목(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을 추가하려는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 카. 생략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1. ~ 2. 생략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5)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거창군 청소년 이용시설 임시휴관 공고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내부 리모델링 및 전시개선 사업 추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소년이용시설 임시휴관을 공고합니다.

2022. 2. 18.

거 창 군 수

1. 휴관기간 : 2022. 2. 22. 00시 ~ 4. 30. 24시

2. 대상시설

시설(기관)명	위 치	문의처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경남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312-96	☎070-4693-5470

3. 휴관사유 : 내부 리모델링 및 전시개선 사업 추진

4. 안내방법

가. 거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나.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시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다. 시설 출입문 등에 휴관 안내문 부착

북상 산수(208호선)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거창군에서 북상면 산수리 일원에 시행예정인 『북상 산수(208호선)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열람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3일

거창군수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거창군수(건설과장)
- 나.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 업 명 : 북상 산수(208호선) 확·포장공사
- 나. 위 치 :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일원
- 다.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960m, B=8.0m(b=6.5m)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 지 :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산37-97번지 일원
-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4.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과
⇒ ☎055-940-3553
-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실시 결과 개별통지 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인이상(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거창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후 보상금 지급

【단,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 시) 수용재결 → (협의불성립 시) 공탁

7.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함

나. 본 열람공고와 별도로 기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m2)	편입 면적 (m2)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1,046,821	16,287						
1	북상면 산수리	산37- 68	도	4,098	29	거창군					
2	“	206	전	624	72	임*랑	대구 수성구 범어동 30*-* 서한**맨션 10*-10*				
3	“	206-1	도	447	447	거창군					
4	“	산37- 4	임	944,41 0	2,670	류*렬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17*-*				
5	“	184	대	444	23	박*옥					
6	“	184-1	도	6	6	거창군					
7	“	198	임	367	50	류*열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17*-*				
8	“	196	전	163	108	이*갑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5길 1*-*				
9	“	산37- 27	도	92	92	류*렬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17*-*				
10	“	187	전	1,332	78	류*열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17*-*				
11	“	187-1	도	136	136	거창군					
12	“	산37- 28	도	591	591	류*렬	거창군 북상면 산수병곡길 18*-29*				

13	“	189	전	833	234	임*적	인천 부평구 삼산동 44*-** ***마을 신***지움아파트 31*-110*				
14	“	190	전	618	61	김*수	거창읍 금천동				
15	“	산37-95	임	6	6	거창군					
16	“	192-1	전	249	249	거창군					
17	“	192	전	819	77	김*자	부산 북구 화명동 228* 코오***채아파트 20*-200*				
18	“	산37-48	임	55,395	539	김*자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구로 6*, *층 30*호				
19	“	산37-97	임	873	873	거창군					
20	“	산37-98	임	219	219	거창군					
21	“	산52	도	1,023	1,023	국 (건설부)					
22	“	산51	구	17,546	709	국(농림수산부)					
23	“	194	답	843	96	정*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45*				
24	“	산37-96	임	628	628	김*자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구로 6*, 3층 30*호				
25	“	1436	도	2,436	2,005	국 (건설부)					
26	“	191	답	1,736	71	이*조	대구 동구 지묘동 21* 팔공**타운 10*-60*				
27	“	산37-33	도	599	599	류*렬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17*-*				

28	“	산50	도	416	416	국 (건설부)					
29	“	196-1	도	356	356	거창군					
30	“	1435	도	2,648	1,118	국 (건설부)					
31	“	202-6	도	29	29	임*아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2*번길1* 10*동90*호 (연산동, 연산***케이뷰)				
32	“	산37- 56	도	136	136	유*렬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17*-*				
33	“	202-5	도	6	6	임*아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2*번길1* 10*동90*호 (연산동, 연산***케이뷰)				
34	“	산37- 32	도	982	982	류*렬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17*-*				
35	“	산37- 26	도	1,263	1,263	류*렬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17*-*				
36	“	202	장	2,705	148	장*석	거창군 거창읍 거창대로 5*, 100*호(동성리젠시)				
37	“	202-4	도	3	3	임*아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2*번길1* 10*동90*호 (연산동, 연산***케이뷰)				
38	“	202-3	도	6	6	임*아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2*번길1* 10*동90*호 (연산동, 연산***케이뷰)				
39	“	202-2	도	33	33	임*아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2*번길1* 10*동90*호 (연산동, 연산***케이뷰)				
40	“	202-1	도	1	1	임*아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2*번길1* 10*동90*호 (연산동, 연산***케이뷰)				
41	“	산37- 24	도	1,704	99	거창군					

<붙임 : 의견서 >

『북상 산수(208호선)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서

1.제 목		
2.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성 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 . . .</p> <p>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거 창 군 수 귀하</p>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